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4. 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3.27. 김윤정 의원 외8명

나. 회부일자 : 2017.3.27.

다. 상정일자 :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17.4.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
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,
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
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2)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3)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(안 제5조)
- 4)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 표창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2017년 3월27일 김윤정 의원의 대표발의 및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되어 있는바,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마포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, 폐의약품의 배출·수집·운반·처리 방법의 관리체계 마련 및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2016년 12월 29일 마포구약사회의 “폐의약품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가능여부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마포구 청소행정과에서는 “생활쓰레기를 전량소각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

담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” 고 회신함에 따라 약국에서는 모아진 폐의약품을 보건소로 운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, 향후 보건소에서는 관계부서 및 마포구약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